

4단계 BK21 연세대학교 수리과학 및 계산교육연구단 운영 내규

제정일: 2021. 01. 2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본 내규는 '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'(이하 "BK21운영지침") 제15조(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)에 의거하여, 수학계산학부(수학) 및 수학계산학부(계산과학공학)에서 수행하는 4단계 BK21 사업의 미래인재양성사업 분야인 "연세대학교 수리과학 및 계산 교육연구단"(이하 "교육연구단"이라 한다)의 자체 운영 내규를 마련하여,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교육연구단 구성

제2조(조직)

-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총괄책임자가 된다.
- ② 교육연구단에는 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을 둔다.
 - 1. 참여교수는 일반대학원 수학계산학부(수학) 및 수학계산학부(계산과학공학)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, 참여 교수의 자격 및 소속, 변경 및 신규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은 BK21운영지침 제 9, 10조 및 본 내규 제8조를 따른다.
 - 2.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BK21운영지침 제 11, 12, 13조와 본 내규 제10조 및 제11조를 따른다.
 - 3.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BK21운영지침 제 14조 및 본 내규 제14조를 따른다.
 - ③ 교육연구단에는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교육연구단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④ 교육연구단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을 둔다.

제3조(운영위원회)

- ①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수학계산학부(수학) 참여교수 4인, 수학계산학부(계산과학공학) 참여교수 2인의 총 7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최고 심의기구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/의결한다.
 - 1. 예산/결산 심의 및 의결
 - 2.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 - 3. 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항
 - 4. 사업 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심의
 - 5. 구성원의 선정, 교체, 변경, 선발 등의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련한 사항 의결
-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.

제4조(자체평가위원회)

- ① 교육연구단의 자체평가위원회는 BK21운영지침 제18조(자체평가)에 의거하여, 연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.
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및 외부인사 등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 및 실적에 대한 평가, 자체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교육연구단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수행한다.

제3장 재정

제5조(재정 및 사업비집행)

- ① 교육연구단의 재정은 4단계 BK21 사업 국고지원금으로 한다.
- ② 사업비집행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은 BK21운영지침 제5장(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)와 '4 단계 BK21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'을 따른다.

제6조(회계기간)

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로 하고, 8차년도 사업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.

제4장 교육연구단 운영

제7조(교육연구단장 책임 및 변경)

-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BK21운영지침 제8조(교육연구단의 장)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 - 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 - 2. 사업의 총괄 수행
 - 3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
 - 4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 - 5.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
- ② 교육연구단장이 1년 이내의 연구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연구 수행이 가능하고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년 허가서(BK양식 1)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(BK21운영지침 제8조 제5항)
- ③ 교육연구단장의 변경 및 대리체제 관련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'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 교수 변경 절차 및 제출서류'(BK산단지침 1)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, 해당하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대학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참여교수 자격 및 변경)

- ① 참여교수의 자격은 BK21운영지침 제9조(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,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. (BK21운영지침 제9조 제3항)
- ③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, 사업 신청 시를 기준(종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)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. (BK21운영지침 제10조(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) 제2항)
- ④ 사업연도별 업적에 따라 최대 20% 이내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으며, 본 내규 제9조(참여교수 평가)에 의거한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체여부를 의결한다.
- ⑤ 참여교수의 변경(교체, 추가 및 제외 등)이 발생하는 경우, 산학협력단 '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 변경 절차 및 제출서류'(BK산단지침 1)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, 해당하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대학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⑥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참여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. (BK21운영지침 제10조(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) 제5항)

제9조(참여교수 평가)

- ① 참여교수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각 전공별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평가세칙(BK세칙 1)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1. 연구업적 : 연구논문, 학술저서, 초청강연, 학회발표, 특허 등
 2. 교육업적 : 강의 업적, 학생 지도 등
 3. 학과기여 : 국내외 저명학자 초청 및 강연, 산학협력, BK21보고서 작성 및 운영 업무 기여 등
 4. 교육연구단장 평가
- ② 참여교수 평가는 평가세칙(BK세칙 1)의 평가용 목록(BK세칙1-별지 서식1)을 각 참여교수별로 작성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교육연구단장이 연구업적 평가표(BK세칙1-별지 서식2)에 평가한다.
- ③ 참여교수 평가 결과는 참여교수의 변경(본 내규 제8조) 및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(본 내규 제13조)에 활용된다.

제10조(참여대학원생 자격 및 변경)

- ① 참여대학원생 자격은 BK21운영지침 제11조(참여대학원생)과 제12조(참여대학원생의 변경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1.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교육연구단 소속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
 2. 학위과정 수료자 :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,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
- ②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, 학사변동(입학, 졸업, 취업, 휴학 등), 대학원생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연구단장의 변경 조치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. (BK21운영지침 제12조(참여대학원생의 변경) 제1항)
- ③ 매 학기 초(3월, 9월)에 참여대학원생 현황(장학금 미지급, 지급 포함) 서류(BK산단지침 2)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. 또한, 참여대학원생은 4월 초, 10월 초에 전일제대학원생을 확인하는 자료(산학협력단 요청자료)를 학과 사무실에서 제출하여야 하며, 각 학과 주임교수가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확인한다.
- ④ 학기 중에 참여대학원생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 변경 사유서(BK양식 2)를 작성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 본부(산학협력단)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(BK21운영지침 제12조(참여대학원생의 변경) 제2항 및 제3항)

제11조(지원대학원생)

- ① 지원대학원생은 BK21운영지침 제13조(지원대학원생)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.
1.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
 2. 참여대학원생 수의 70%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음
- ②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(BK21운영지침 제13조(지원대학원생) 제2항)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70만 원 이상
 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30만 원 이상
 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00만 원 이상
- ③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 초(3월, 9월)에 본 내규 제12조(참여대학원생 평가)에 의거한 평가결과와 대학원생의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지도교수와 해당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한다. 또한, 참여대학원생

현황(장학금 미지급, 지급 포함) 서류(BK산단지침 2)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.

- ④ 학기 중에 지원대학원생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변경 사유서(BK양식 2-1)를 제출 받아 해당 학과의 주임교수 및 교육연구단장이 승인한다. 또한,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 본부(산학협력단)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(BK21운영지침 제12조(참여대학원생의 변경) 제2항 및 제3항)

제12조(참여대학원생 평가)

- ① 참여대학원생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각 전공별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평가세칙(BK세칙 2)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1. 직전학기까지의 누적 평년평점 평균
 2. 학술대회 발표 실적
 3. 학술논문 게재 실적
 4. 교육연구단 활동참여도
 5. 지도교수의 평가
- ② 참여대학원생 평가는 매년 1월 초 및 7월 초에 이루어지며, 평가점수는 장학금 지원 및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 각종 4단계 BK21 지원 대상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.

제13조(참여교수의 성과급)

- ① 참여교수의 성과급지급 지급기준은 BK21운영지침의 성과급 지급지침을 따른다.
- ②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1인당 연 480만원 이내로 연 1회(매년 12월~2월 중) 지급하며 교육연구단 운영비의 성과급 항목에서 집행한다.
- ③ 성과급은 교육, 연구 및 교육연구단 기여도의 종합적 평가(제9조 참여교수 평가) 결과에 준하여 교육연구단장이 선정하며, 제9조(참여교수 평가)에 의거하여 100점 만점에 A등급은 70점~100점, B등급은 40점~69점, C등급은 40점 미만으로 하여 차등 지급한다.
- ④ 교육연구단장이 본 내규 제9조의 결과와 성과급 예산을 기반으로 참여교수의 성과급 규모를 책정한다.

제14조(신진연구인력)

- ① 신진연구인력(박사후과정생, 계약교수)의 근무요건 및 임용원칙은 BK21운영지침 제14조(신진연구인력)에 준하여, 채용시행세칙(BK세칙 3)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- ② 채용된 신진연구인력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신진연구인력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자교 박사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가 본 교육연구단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(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)로 하되,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신진연구인력은 본 내규 제9조(참여교수 평가)에 준하여 매년 정기적 평가를 받는다. 평가용 목록(BK세칙1-별지 서식1)을 신진연구인력 별로 작성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교육연구단장이 연구업적 평가표(BK세칙1-별지 서식3)에 평가한다.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및 재계약여부와 차기 년도 연봉에 반영한다.

제15조(행정직원)

- ① 행정직원은 교육연구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.
- ② 행정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채용시행세칙(BK세칙3)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- ③ 행정직원은 매년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, 교육연구단장이 행정직원 업무 평가표(BK세칙1-별지 서식4)에 평가한다.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및 재계약여부와 차기 년도 연봉에 반영한다.

제14조 (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)

- ①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(4개국 이상 참여,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,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)을 충족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조청 연사, 논문발표자(구두 또는 포스터)에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참가자에게 항공료, 학회등록비 및 체재비(학회기간 및 학회참가를 위한 입출국 기간) 등을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원한다. 단, 지원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국제학술회의 참가일로부터 1주전까지 신청 서류(BK양식 3 및 BK양식 4)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(BK양식 5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 (해외연수 지원)

- ① 교육연구단에서 규정하는 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10일 초과 1년 이내의 연구 및 교육 연수 활동을 말한다.
- ② 해외학자와 공동연구 및 해외 기관에서의 교육을 위해 교육연구단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 중에서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 지원대상 학생은 연수계획서(BK양식 6)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, 연수자의 연구수행 및 학적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연수를 진행한다.
- ④ 지원금액은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(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)를 지원한다.
- ⑤ 해외연수생은 교육연구단의 우수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세부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, 연수 완료가 발생 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(BK양식 7)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 (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)

- ① 해외학자는 BK21운영지침 제14조의3(해외학자)에 의거하여 해외 소재 대학, 연구소,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말하며,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.
- ② 해외학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경우, 활용계획서(BK양식 8)을 작성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, 신진연구인력,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,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하며, 세미나/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. 초빙된 해외학자는 해외학자 활용보고서(BK양식 9)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지원 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,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(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)를 지원한다. 또한, 해외학자의 강사료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「소득세법」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.

제5장 보칙

제17조(준용)

이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BK21운영지침과 연세대학교 규정 및 일반대학원 수학계산학부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8조(web-site 운영)

교육연구단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육연구단 현황, 사업계획서, 사업성과,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교육연구단장이 승인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 (2021. 01. 20)

제2조(유효기간) 이 내규는 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.